

장차법 검토안
(문화관광부)

※ 이하 내용은 문화관광부의 공식의견이 아닌 실무의견임

□ 문화부의 기본입장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 문화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법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법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문제는 문화영역과 마찬가지로 접근의 문제, 재화·용역서비스의 차별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데 별도의 절로 분리해야 하는지는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법률안 검토의견

법률안	조정안	조정사유
제2조(정의) 13. “문화·예술 사업자”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u>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u>	제2조(정의) 13. “문화·예술 사업자”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굳이 문화·예술사업자에게 부담을 강조하는 듯한 용어를 삽입할 필요가 있는지? 일체의 행위라함은 영리, 비영리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임
제14조(차별금지) ⑥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와 이를 보관·대출하는 기관 및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문자, 화면낭독·해설·확대프로그램, 음성서비스, 전화등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u>이를 위해 국가는 장애인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제14조(차별금지) ⑥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와 이를 보관·대출하는 기관 및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문자, 화면낭독·해설·확대프로그램, 음성서비스, 전화등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장애인정보센터(장애인도서관)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법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우려가 있음 ※ 도서관법 관련 조문 : 별첨 참조

⑨각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장애인 도서관, 그 밖에 위 각 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위항 관련 삭제
제16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이를 위해 문화·예술 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u>질적으로</u>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이를 위해 문화·예술 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양적으로는 동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질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질과 양을 포괄할 수 있다고 봄
제49조(장애인 인권자료실) ③장애인 인권자료실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제49조(장애인 인권자료실) ③장애인 인권자료실은 「<u>도서관법</u>」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됨(’06.9.10)

<참고> : 장애인도서관 관련법

도서관법('06.9.10 전면개정)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4조 9항

-> 삭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위 조항은 장애인 도서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위 각 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장애인 도서관만을 삭제함에 타당할 것임

2. 장애인차별문제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자구나 문구들에 있어서는 조정안대로 수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3. 장애인 도서관에 대해서는, 과연 '도서관법'만으로 충분한지, 도서관법내에서도 국립도서관만으로 해결될 일인지 의문이나, 이는 관련법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도서관법을 개정하도록 함.